#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38

발의연월일: 2022. 12. 9.

발 의 자:김성원·김정재·김태호

박대수 • 박덕흠 • 박정하

이주환 · 정우택 · 최영희

최춘식 • 태영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 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배"를 "4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 으로 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 내에서 발 행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	2
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u>2배</u> 를 초과하지 못한다. <u>&lt;단서</u>	<u> 4배 다만,</u>
<u>신설&gt;</u>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 내에서 발
	<u>행할 수 있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
	과한 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u>한다.</u>
<u>⑤</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에서	<u> ⑥</u> <u>শ</u> ]5 চ্ট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조(감독)
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 도·감독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등에 관한 사항
- <u>5.</u> (현행 제4호와 같음)